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08호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공 고 제 1 7 3 4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차량(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2
- 공 고 제 1 7 4 8 호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아 동 복 지 과 6
- 공 고 제 1 7 4 9 호 남동구 금고 지정계획 재공고 세 무 과 18
- 공 고 제 1 7 5 0 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인천대공원 조성사업) 공 원 녹 지 과 23
- 보 건 소 공 고 제 8 8 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식품 위 생 과 30
처리 공고

고 시

- 고 시 제 1 0 4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만수동 복개제1공영주차장)사업 실시 계획 고시 도 시 재 생 과 32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남동구청 제2022-1734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차량(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 9월 19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9.19. ~ 2022.10.4.
3. 공고대상 : 이륜차 9대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주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내역

연번	접수 번호	차량 등록 번호	차명	수취인명	주소	발송 일자	미배달 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일	보관장소	비고
1	2022-00116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인주대로713번길 만월어린이공원 노상주차장	2022.7.29.	㈜인천폐차 사업소	
2	2022-00202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호구포로725 버거킹 맞은편 인도 위 수풀	2022.9.2.	㈜인천폐차 사업소	
3	2022-00206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백범로310 춘희네죽발 집 앞 인도 가로수 아래	2022.9.2.	㈜인천폐차 사업소	
4	2022-00207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용천로3번길50-13 백학빌라5동 사유지주차장	2022.9.2.	㈜인천폐차 사업소	
5	2022-00213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하촌서로47번길56 금원아파트 자전거거치대	2022.9.2.	㈜인천폐차 사업소	
6	2022-00216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만수서로60 kt 앞 인도 위	2022.9.2.	㈜인천폐차 사업소	
7	2022-00218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동1333-6 이면도로	2022.9.2.	㈜인천폐차 사업소	
8	2022-00229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청능대로715번길59 논현12단지 1202동지하주차장 지하2층	2022.9.8.	㈜인천폐차 사업소	
9	2022-00230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소래역로119 동산마을 제1지하주차장	2022.9.8.	㈜인천폐차 사업소	

소유자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22-0011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5.12. ○ 견인일 : 2022.7.29.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인주대로713번길 만월어린이공원 노상주차장
	2022-0020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7.19. ○ 견인일 : 2022.9.2.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호구포로725 버거킹 맞은편 인도 위 수풀
	2022-0020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7.26. ○ 견인일 : 2022.9.2.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백범로310 춘희네족발 집 앞 인도 가로수 아래
	2022-00207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7.27. ○ 견인일 : 2022.9.2.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용천로3번길50-13 백학빌라5동 사유지주차장
	2022-00201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7.28. ○ 견인일 : 2022.9.2.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하촌서로47번길56 금원아파트 자전거거치대

관
리
번
호

2022-0021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8.2.
- 견인일 : 2022.9.2.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만수서로60 kt 앞 인도 위

2022-0021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8.2.
- 견인일 : 2022.9.2.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구월동1333-6 이면도로

2022-0022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8.12.
- 견인일 : 2022.9.8.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청능대로715번길59 논현12단지 1202동지하주차장 지하2층

2022-0023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현장확인일 : 2022.8.12.
- 견인일 : 2022.9.8.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소래역로119 동산마을 제1지하주차장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 - 1748호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급식 지원대상의 명료화를 통해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임 법령 개정조문 변경(안 제1조)
- 지원대상의 명료화(안 제2조,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아동복지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아동복지과
- 연 락 처: ☎ 453-8353, FAX 453-587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2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21. 12. 21.시행)과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22.06.21. 시행)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임 법령 개정조문 변경(안 제1조)
- 지원대상의 명료화(안 제2조, 안 제3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제35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제35조제4항”을 “같은 법 제35조제5항”으로, “시행령 제36조 제5항”을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과 18세 이상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다음”으로, “해당하여야”를 “해당하는 아동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로, “아동”을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긴급복지”를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보호자가 사망”을 “보호자의 사고, 사망, 급성질환, 만성질환”으로, “수용되는”을 “수용”으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를 “보호가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건강보험료 이하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를 “담임교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제4조 중 “(이하“구청장”이라 한다.)”를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선정결과 등를”을 “선정결과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같은 법 제35조제5항 ----- ----- 시행령 제36조제6항-----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과 18세 이상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 급식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구의 아동	제3조(지원대상) ----- --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다음 ----- 해당하는 아동으로 ----. 1. ----- -----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
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다. 소년소녀가정 아동으로
등록된 아동

라.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일정기
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아동

마.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의 아동

바.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
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
가 없는 가구의 아동

사.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
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
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
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
한 아동

아.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
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
준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아
동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삭 제>

<삭 제>

마. 「긴급복지지원법」 제5
조에 따른 긴급복지 ----

바. 보호자의 사고, 사망, 급
성질환, 만성질환-- 수용
----- 보호가
필요한 -----

<삭 제>

<삭 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
인 가구의 아동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한 최저건강보험료
이하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
· 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남동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생 략)

<신 설>

제4조(지원내용)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별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급식형
태를 선택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조 · 중 · 석식을 지원할 수 있
다.

제8조(대상자 선정 및 통지)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급식
지원 대상 아동에 선정시 선정
결과 등을 신청자 및 아동에게

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인 가구의 아동

차. ----- 담임교사-----

2. (현행과 같음)

3. 외국 국적 아동 중 제1호 또
는 제2호의 지원기준에 해당
하는 아동

제4조(지원내용)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제8조(대상자 선정 및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선정
결과를 -----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6. 21.>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6. 21.>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6. 21.>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2 - 1749호

남동구 금고 지정계획 재공고

남동구 금고지정 계획공고(제2022-1589호, 2022. 8. 25.)결과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함에 따라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남동구 금고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남 동 구 청 장**1. 금고의수 : 1개의 금고(단수금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

2. 약정기간 : 2023. 1. 1. ~ 2026. 12. 31.(4년)**3. 지정방법 : 일반공개경쟁****4. 신청자격 : 「은행법」에 따른 은행****5. 금고의 주요업무**

-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

6. 신청절차

- 서류열람

- 기 간 : 2022. 9. 29.(목) (※09:00~18:00 근무시간 중)
- 장 소 : 남동구청 세무과(종합민원실 1층) (☎ 032-453-2362)
- 열람서류 : 2020~2021년도 결산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등

※ 남동구 홈페이지에서 상시 열람 가능

○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22. 9. 30.(금) (※ 09:00~18:00 근무시간 중)
- ※ 신청서 접수기한이 지난 뒤에는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 장 소 : 남동구청 세무과(종합민원실 1층)
- 제출부수 : 제안서 13부 (원본1, 사본12), 증빙서류 13부(원본1, 사본12)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제출서류 : 금고지정 신청서 1부, 제안서 및 각종 증빙서류 13부, 각서 1부, 사용인감확인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기타 요청서류

※ 남동구 금고지정 계획 공고(제2022-1589호, 2022. 8.25.)에 따라 기 신청한 금융기관은 재공고에 따른 신청서(제안서)를 접수한 것으로 간주함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1	
3. 구민 이용의 편의성	19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7	
6. 기타 사항(탄소중립 기여도)	2	

※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1] . [별표2] 참고

8. 심의·평가방법

-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별표 1)과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별표 2)에 따라 남동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세부 배점기준을 확정하여 금융감

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함.

- 서류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면접심의를 병행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 금융기관에서는 면접에 응하여야 함.

(※ 불응 시에는 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심의·평가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심의기준에 의거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의하되,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심의·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9.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등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함.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 금융기관과 약정체결을 진행함.
-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 은행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동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우리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동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심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배상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으며, 향후 금고지정 심의·평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로 지정되어 금고업무 상호 인계·인수 시 기존 금고에 예치한 정기에 금에 대하여는 만기 도래한 후 인계·인수함.
- 새로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인천광역시 1금고 은행과 협조하여

수납세입금 집계 및 정산 지연, 구민의 세입금 납부불편 초래 등 관련 세입사무 처리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

- 금고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3. 1. 1.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2023. 1. 1.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금고약정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음.

10.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선정된 후 약정 체결, 금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 등은 금융기관 부담으로 함.

11. 기타사항

- 제안서는 「2022년도 남동구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되, 심의 및 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별 색인표 부착 요망
-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과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처리 될 수 있음
- 제안서 접수 시 은행별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3부를 확인한 후 밀봉할 예정으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및 법인인감 날인된 사용인감 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 추가제출 서류(제출자료 검증 등 확인자료) 1부는 밀봉 제외

- 접수된 제안서(증빙서류 포함)는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남동구청 세무과 관계공무원이 확인하여 봉합 날인 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개봉함
-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내용)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 세무과로 문의 (☎ 032-453-2362)

[별표1]

남동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소계	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 평가기관(4점) - 국내 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8)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총자본비율) (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대손충당금 적립율 (건전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가능	(19)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계	21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	(2)	
	마.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2)	
3. 구민 이용의 편의성	소계	19	
	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5)	
	나.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 ※ 금고 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7)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계	24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2)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소계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2)	
6. 기타 사항		2	
	가. 탄소중립 기여도 ※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 비교평가	(2)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2 - 1750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 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 09. 22.

남 동 구 청 장

- ☐ 사 업 명 :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보상수탁자: 인천도시공사)
- ☐ 열 란 기 간 : 2022. 09. 22. ~ 2022. 10. 07.
-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236, 2층), ☎ 032-440-5823
 - 인천도시공사 보상처(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5, 20층), ☎ 032-260-5473
 - 남동구청 공원녹지과(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 032-453-6293
- ☐ 의견제출기간 : 2022. 09. 22. ~ 2022. 10. 07.
- ☐ 수용할 토지의 표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87 등 24필지
 - 토지 소유자: 경***스 등 36명
 - 붙임조서 참조
- ☐ 수용할 물건의 표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113-1 분묘 등 3건
 - 토지 소유자: 미상1 등 3명
 - 붙임조서 참조
-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수용할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지분	지분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송달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남동구 장수동	87	대	21.00	18/342	1.10	주소 불명(공시송달자)	경***스				
2	남동구 장수동	87	대	21.00	72/342	4.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2로 86, ***동 ****호(성북동, 성동마을 엘지빌리지1차)	김*선				
3	남동구 장수동	87	대	21.00	144/1881	1.6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21, ***동 ****호(압구정동, 한양아파트)	김*구				
4	남동구 장수동	87	대	21.00	144/1881	1.6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61길 37, ***동 ****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김*수				
5	남동구 장수동	87	대	21.00	108/1881	1.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61길 37, ***동 ****호(압구정동, 한양아파트)	김*혜				
6	남동구 장수동	87	대	21.00	27/342	1.65	주소 불명(공시송달자)	김*선				
7	남동구 장수동	87	대	21.00	27/342	1.65	주소 불명(공시송달자)	김*옥				
8	남동구 장수동	595-13	잡종지	74.00	1/1	74.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자로 **번길 **-*****교회	대한***** 교회				
9	남동구 장수동	87	대	21.00	16/342	0.98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세종로대우복합빌딩아파트 ****호(내수동)(공시송달자)	데***김				
10	남동구 연동	105-7	도로	114.00	1/1	114.00	주소 불명(공시송달자)	미등기01(임 야대장소유자 최*참)				
11	남동구 연동	산75	임야	2,678.00	1/1	2,678.00	주소 불명(공시송달자)	미등기02(임 야대장소유자 최*참)				
12	남동구 연동	산77	임야	1,190.00	1/1	1,190.00	주소 불명(공시송달자)	미등기03(임 야대장소유자 최*참)				
13	남동구 연동	산79-1	임야	1,359.00	1/1	1,359.00	주소 불명(공시송달자)	미등기04(임 야대장소유자 최*참)				

제1708호

남동구 구보

2022. 9. 22. 목요일

14	남동구 장수동	183	공원	350.00	1/1	350.00	주소 불명(공시송달자)	미등기05(토 지대장소유자 김*현)				
15	남동구 장수동	184-8	공원	96.00	1/1	96.00	주소 불명(공시송달자)	미등기06(토 지대장소유자 김*훈)				
16	남동구 장수동	217-1	공원	337.00	1/1	337.00	주소 불명(공시송달자)	미등기07(토 지대장소유자 오*현)				
17	남동구 장수동	422-2	도로	106.00	1/1	106.00	주소 불명(공시송달자)	미등기08(토 지대장소유자 윤*선)				
18	남동구 장수동	422-1	도로	89.00	1/1	89.00	주소 불명(공시송달자)	미등기09(토 지대장소유자 윤*경)				
19	남동구 장수동	280-5	도로	16.00	1/1	16.00	주소 불명(공시송달자)	미등기10(토 지대장소유자 윤*동)				
20	남동구 장수동	282-2	도로	53.00	1/1	53.00	주소 불명(공시송달자)	미등기11(토 지대장소유자 윤*현)				
21	남동구 장수동	427-2	공원	555.00	1/1	555.00	주소 불명(공시송달자)	미등기12(토 지대장소유자 윤*삼)				
22	남동구 장수동	284-1	도로	36.00	1/1	36.00	주소 불명(공시송달자)	미등기13(토 지대장소유자 윤*석)				
23	남동구 장수동	423-8	도로	5.00	1/1	5.00	주소 불명(공시송달자)	미등기14(토 지대장소유자 윤*평)				
24	남동구 장수동	209	전	139.00	1/1	139.00	주소 불명(공시송달자)	미등기15(토 지대장소유자 이*승)				
25	남동구 장수동	227-1	공원	793.00	1/1	793.00	주소 불명(공시송달자)	미등기16(토 지대장소유자 이*수)				
26	남동구 장수동	417-2	도로	446.00	1/1	446.00	주소 불명(공시송달자)	미등기17(토 지대장소유자 한*교)				
27	남동구 장수동	산33-4	임야	55.00	1/1	55.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9, ***동 ****호 (사당동,극동아파트)	백*형				
28	남동구 장수동	87	대	21.00	16/342	0.98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대우복합빌딩아파트 ****호(내수동)(공시송달자)	베***김				
29	남동구 장수동	87	대	21.00	27/342	1.65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브****김				

제1708호

남동구 구보

2022. 9. 22. 목요일

							****호(내수동 대우빌딩)(공시송달자)					
30	남동구 장수동	산28-6	임야	866.00	1/10	86.60	주소 불명(공시송달자)	서**삼				
31	남동구 장수동	422-6	도로	5.00	1/3	1.6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030, ***동 ****호 (만수동,담방마을아파트)	성*연				
32	남동구 장수동	87	대	21.00	24/342	1.47	* ****Drive Park Ridge, NJ. 07656 USA	신*우				
33	남동구 장수동	422-6	도로	5.00	2/3	3.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030, ***동****호 (만수동,담방마을아파트)	오*형(망)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030, ***동 ****호 (만수동,담방마을아파트)	성*연	기타권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550번길 63, ***동 ****호 (주안동,주안휴먼빌아파트)	오*자	기타권리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82, ***동 ****호 (가좌동,진주아파트)	오*현	기타권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130번길 32, ***동 ****호 (송도동,송도자이하버뷰 2단지)	오*자	기타권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 1030, ***동 ****호 (만수동,담방마을아파트)	오*자	기타권리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176번길 8, ***호(권곡동, 성환2차아파트)	오*현	기타권리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천로 118, 708동 ****호(부개동, 부개주공7단지아파트)	오*경	기타권리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160번길 51-1, *동 ****호(부평동, 영광하이츠빌)	오*훈	기타권리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221번길 23, ***호(부평동, 다운그린빌)	오*성	기타권리	
34	남동구 장수동	421-2	도로	3.00	1/1	3.00	주소 불명(공시송달자)	최*규				
	남동구 장수동	421-3	도로	20.00	1/1	20.00	주소 불명(공시송달자)	최*규				
35	남동구 장수동	87	대	21.00	27/342	1.65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호(내수동 대우빌딩)(공시송달자)	캐*김				

제1708호

남동구 구보

2022. 9. 22. 목요일

36	남동구 장수동	87	대	21.00	16/342	0.98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문안로3길 30, ****호(내수동 대우빌딩)(공시송달자)	플****김				
----	------------	----	---	-------	--------	------	--	--------	--	--	--	--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수용할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명	구조및 규격	수량	단위	지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남동구 장수동	산113-1	분묘	단장	1.0	기	1/1	주소 불명(공시송달자)	미상1				
2	남동구 장수동	산113-1	분묘	단장	1.0	기	1/1	주소 불명(공시송달자)	미상2				
3	남동구 장수동	산113-1	분묘	단장	1.0	기	1/1	주소 불명(공시송달자)	미상3				

의견서

1.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2-88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직권말소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 권 말 소 일 자 : 2022. 9. 20.
3. 처 분 근 거 법 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공 고 기 간 : 2022. 9. 20. ~ 2022. 10. 4. (15일간)
5. 직권말소 처분업소 내역

업종	신고 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원인 및 내 용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일	비고 (직권말소일)
일반음식점	2008-0199470	뚝배기 이탈리아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하로 497-15, 대건빌딩 3층 302호 (구월동)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2022-08-03	2022-09-20

6. 고 지 사 항

- 본 직권말소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2

2022. 9. 20.

남 동 구 보 건 소 장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2-104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만수동 복개제1공영주차장)사업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만수동 복개제1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29조 및 제83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09. 22.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0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칭: 만수동 복개제1공영주차장 확충공사

3. 사업규모

- $A=5,375\text{m}^2$ (주차대수: 278대, 연면적: $A=4,480\text{m}^2$)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동구청(교통행정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공작물축조허가일 ~ 2022.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이름	주소	
1	만수동	1003	구	11,714.6	2,584.0	인천광역시	-	
2	구월동	1324-12	구	11,688.4	2,791.0	인천광역시	-	
합계				-	5,375			